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제 37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한국에서의 대일과거청산 소송”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시 : 2월 23일(금) 15:00 ~ 17:00

○장소 : Zoom 강의실

목차

“한국에서의 대일과거청산 소송”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이 자료집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36)

2024.2.23.

연세대학교 법학연구단 법사학회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연구단 발표문

한국에서의 대일과거청산 소송

김 창 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머리말

- 일제강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혹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한국의 법원들이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했음.
 - 2018.10.30. 대법원 강제동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3다61381)
 - 2021.1.8.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본군‘위안부’ 판결 (2016가합580239; 김정곤, 김경선, 전경세 판사)
 - 2023.11.23. 서울고등법원 일본군‘위안부’ 판결 (2021나2017165;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판사)
- 그 판결들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한일관계에도 커다란 파문을 던졌으며, 전 세계의 법률가들에 의해서도 주목되고 있음.
- 이 발표에서는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그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보기로 함.

II. 배경

■ 일본 소송

- 냉전이 종식된 이후인 1990년대에 들어 한국인 일제 강점 피해자(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사할린 한인·원폭 등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일본에서 대거 제기됨.

- 이에 자극받아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 홍콩 · 네덜란드 · 영국 · 미국 · 호주 · 뉴질랜드 · 중국 피해자들의 소송도 이어짐.
- 일본의 책임을 묻는 일본에서의 대일 과거청산 소송은 총 100여건, 그 중 50여건이 한반도 출신자(재일 한인, 중국적 조선족 포함)가 제기한 소송임.
- 한국인이 제기한 소송 중, 원폭 피해자 소송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케이스가 있지만, 불법강점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직접 요구한 소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케이스는 없음.

■ 미국 소송

- 피해자들이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미국에서의 소송.
- 미국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 9월 18일에 한국 · 중국 · 대만 · 필리핀 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 미국 법원은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 일본 및 미국 법원에서의 구제 가능성이 사라진 후, 한국의 법정이 피해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의지처가 됨.

III. 강제동원 판결

1. 경과

- 2000년 5월 1일에 미쯔비시(三菱)중공업 주식회사 강제동원 피해자 6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제소(이하 '미쯔비시중공업 소송'), 2005년 2월 28일에는 일본제철 주식회사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이하 '일본제철 소송'), 이후 다수의 관련 소송이 제기됨.
- 한국 소송에서도 초반에는 1, 2심 모두 패소 판결이 잇따랐으나, 2012년 5월 24일에 이르러 대법원 제1부(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가 일본제철 소송과 미쯔비시중공업 소송 모두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의 획기적인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함.
- 2013년 7월 10일과 7월 30일에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각각 위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지만, 일본제철과 미쯔비시중공업이 또 다시 상고함.
-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사법농단' · '재판거래'라는 희대의 사건으로 선고가 지연되어, 2018년 10월 30일에 이르러서야 일본제철 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고, 뒤이어 11월 29일에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됨.

2. 판결의 핵심 내용과 자리매김

■ 핵심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인가임.

■ 이 쟁점에 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다섯 개의 의견으로 나뉘었으나, 그 중 ‘법정의견’으로서 유일하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다수의견임.

←법원의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법원조직법」 제66조 1항)

■ 다수의견 :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다수의견에 따르면, 강제동원 문제는 애당초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이것은 곧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적이 없고, 따라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 정부가 받은 무상 3억불에 해당하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이하 ‘무상 3억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그렇다면 지금 한국인 피해자 개인은 법원에 피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그 피해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됨. 또한 무상 3억불로부터 지원을 받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됨.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국제법에 따른 타당한 판결임

- 대법원 판결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의 조약 해석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청구권협정」을 해석·적용한 것으로서 타당함.

-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결임.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법적인 판단인 동시에 역사적 정의를 선언한 것임.

- 대법원 판결은 일본 소송부터 계산하면 30년 이상 노구를 이끌고 피해의 구제를 호소한 피해자들, 그들을 지원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의 간

절한 노력의 산물임.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서 확인한 선언임.

- 식민지 지배 책임은 2001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에 걸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배외주의 및 그에 관련되는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 이르러 비로소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식화된 의제임.

- 대법원 판결은 바로 그 식민지 지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소중한 선언인 것임.

■ 대법원 판결에서 출발해야 함.

- 한국의 정부, 언론, ‘전문가’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잘못된 주장(‘현금화하면 큰 일 난다’)에서 출발하고 있음.

- 한일 갈등의 원인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공격임.

-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함.

3. ‘불법강점’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 「청구권협정」 등의 내용

- 1951년 10월부터 14년에 가까운 회담 과정을 거쳐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은, 그 제1조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무상으로 3억불에 해당하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공여하고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 2억불을 공여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했음.

제2조 1. 양 체약국(締約國)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우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¹⁾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 .

3. . . .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

1)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으로서 제2조에 열거한 지역에 있는 것 및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실제로 이들 지역의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 및 그 주민(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것의 처리 및 일본국에서의 이들 당국 및 주민의 재산 및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이들 당국 및 주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한다)의 처리는 일본국과 이들 당국 사이의 특별협정의 주체로 한다.” / 제2조 (a) “일본국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민의 타방 계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위의 조문에 관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이하 「합의의사록」)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했음.

2. 협정 제2조에 관하여...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이하 「대일청구요강」) 가운데 관련 내용인 제5항은 아래와 같음.

⑤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 청구

(가) 일본 유가증권

(나) 일본계 통화

(다)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마) 한국인의 대 일본 정부 청구 은급(恩給) 관계

(바)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 조약 해석의 기준

- 대법원 판결은 조약 해석의 기준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 및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의 내용을 제시함.

;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때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

■ ‘문언의 통상적 의미’는 명확하지 않음

-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 청구권에 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매우 강한 표현 / 하지만 해결된다는 청구권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이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들에 해결된 권리의 원인이 명시되어 있는 것과 선명하게 대비됨.

; 예를 들어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정식 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의 전문에는 “양자 사이의 전쟁상태가 존재하는 데 따른 결과로서 지금도 여전히 미해결인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청구권협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음. 그래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 대법원 판결 :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해석임.

; “우리가 일본국에 요구하는 청구권을 국제법에 적용해서 보면 영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 해결 문제인 것이다.” “일제의 36년 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가 아니다. (『한일회담백서』, 1965)

; “평화조약에서 명시된 바에 의하여 영토 분리에서 오는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만” (『청구권자금백서』, 1976)

;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결정』, 2005)

-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식민지배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청구권협정」 또한 식민지배 문제는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일본 측도 1965년에 “우리나라(일본 : 저자)에 의한 조선의 분리 독립의 승인에 따라, 일한 양국 간에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게 된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그 주장을 바꾸지 않았음.

- 그런데 여기에서 ‘영토의 분리’라고 할 때는, 분리 이전의 영토의 불법성은 전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합법성이 전제됨. ‘영토의 분리’에 따른 문제는, 예를 들면 식민지 조선에 진출해 있던 일본 은행이 패전 뒤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 식민지 조선인이 그 은행에 들었던 예금이나 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과 같은 문제인 것임.

-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의 체결 당사자인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공통의 해석을 전제로 하고 그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불법강점에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타당한 해석을 제시한 것임.

4. 왜 ‘불법강점’인가?

■ 대법원 판결 : 원고들의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므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왜 ‘불법적인 식민지배’인가?

- 1948년 헌법 전문(前文)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1948년 헌법 제100조 -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 현행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위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強占)에 지나지 않”는다.

■ ‘징용’과 ‘강제동원’은 다르다

- 징용
 - ; ‘징용’은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등 일제의 법령에 근거한 제도.
 - ; 다시 말해 일제는 ‘징용’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한반도의 인민을 데려가서 일을 시킨 것임.
 - ; 그러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징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저야 할 책임 이외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됨.
- 강제동원
 - ; 대법원 판결은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이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효력이 배제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일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한반도의 인민을 강제로 연행해서 강제로 노동을 시킨 것, 즉 강제동원을 한 것이 됨.

;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발생함.

- 대법원 판결은 원고들의 피해가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등 일제의 법령에 근거한 ‘징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령들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강제동원’에 기인하는 것이며, ‘강제동원’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선언한 것임.

■ ‘징용’은 해결되었다?

- 「대일청구요강」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음.
- 1944년 「국민징용령」(칙령 제89호)에서는 피징용자에게 당연히 임금을 주게 되어 있었고, 징용 기간 중의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이나 그로 인한 사망 등의 경우에 부조를 하게 되어 있었음. 그런데 한국인 피해자들은 그 임금과 부조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그 받지 못한 임금이 미수금이고 그 받지 못한 부조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 보상금임. 그리고 기타 청구권은 미수금 또는 보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임.
- 이것들은 「대일청구요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임.
- 다만 ‘징용’은 해결되었다고 할 때,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추가적으로 따져보아야 함.
-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르면, ‘징용’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징용’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님. 즉 피해자 개인은 여전히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 핵심은 ‘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다

- 중요한 것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판단대상은 그러한 ‘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라는 점임.
- ‘강제동원’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징용’과는 전제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임.
- ‘강제동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강점이라는 전제 위에서, 일제의 법령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배제된다는 전제 위에서 인정되는 불법행위임.

- 불법적인 식민지배 문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청구권협정」에서 그러한 강제 동원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는 것임.

■ ‘강제징용’은 부적절한 용어이다

- 불법성을 내포하는 ‘강제’와 합법성을 내포하는 ‘징용’을 엮는 것은 형용모순임.
- 법적으로 침해하게 대립되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큼.
-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법정의견은 ‘강제징용’이라는 용어를 일절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일관되게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일본 정부와 언론은 불법성을 내포하는 ‘강제’라는 의식적으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징용공(徴用工)’이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음.
- 한국 정부와 언론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5. 일본 정부의 주장은 부당함

■ 국제법 위반?

- 2018년 10월 30일 「외무대신 담화」 :
 1.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며,” “1965년의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일한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뒤집는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본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 . .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도 포함하여,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으면서,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생각”이다.
-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창한 비난의 실체는 「청구권협정」 제2조 위반이라는 것임.
- 일본 정부는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면서 대법원 판결을 탄핵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의 모습일 것임.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자신의 해석이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일절 밝히지 않음. 위의 「외무대신 담화」에는 “참고”로서 「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및 3항의 조문이 첨부되어 있을 뿐임.
-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해석은 국제법 위반이다’?

■ 애당초 해석상의 분쟁은 존재하는가?

- 대법원 판결의 해석은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 일본 정부의 주장은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다.’
-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하려면, 한국 측이 ‘A(강제동원 문제)는 B(「청구권협정」의 대상)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 대해 일본 측은 ‘A는 B이다’라고 맞서야 함. 그런데 한일간 대립의 실질은, 한국 측이 ‘A는 B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 대해, 일본 측은 ‘A는 B이다’가 아니라 ‘C(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B이다’라며 맞서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한국 정부가 답을 가져와라?

-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즉각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만 높였음.
-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음. 결국 ‘내 마음에 드는 답을 가져올 때까지 무조건 퇴짜다’?
-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선언을 하라? 한국 정부가 압력을 가해 대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을 뒤집게 하라?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라?

6.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 한국 정부는 마땅히 중요 현안인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나서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선언한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나아가야 함.
- 대법원 판결은 일차적으로는 한국인 개인과 일본 기업이라는 사적 주체들 사이의 개별 분쟁에 대한 판단이므로, 패소한 일본 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면 일단락됨.
- 그런데도 일본 기업들은 한국 최대의 로펌을 동원해 각각 10년이 넘게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다투어 놓고서, 정작 판결이 선고되자 못 따르겠다고 하고 있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의 원고 5명은 전원 사망한 상태였고, 일본제철 소송의 원고 4명 가운데 3명도 사망한 상태였음. 판결 선고를 지켜 본 것은 94세의 원고 1명뿐이었음.
- 일본 기업들의 대법원 판결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 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 또한 일본 정부의 요구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제국주의시대의 치외법권을 일본 기업에게 인정하라는 것에 다름 아님.
- 대법원 판결은 법대로 집행하면 됨.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니 강제집행을 하면 됨.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인 강제집행에 대해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음.
-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일본 정부에게 그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가는 것임. 대법원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남아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함.

■ ‘해법’의 주요 내용

- (판결금 지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
 - 계류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 확정시 판결금 등 지급 예정 . . .
- (재원 관련)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

■ ‘해법’은 헌법 위반임

- ‘해법’은 헌법이 선언한 3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
 -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일본 기업의 책임을 행정부가 나서서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니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 ‘해법’은 헌법이 선언한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을 흔드는 것임.
 - ; 대법원 판결의 출발점은 ‘불법강점’이며 그 근거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임.
 - ; 대법원 판결의 부정은 곧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임.
- 그 결과 ‘해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임.

■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위헌 상태를 이어가고 있음.

- 승소 원고인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이 재단에 대해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그만큼 지연이자가 불어나고 있음.
- 재단은 2023년 7월 3일부터 12개의 법원에 공탁신청을 했으나 공탁관에 의해

모두 불수리되었음.

- 재단은 그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12개의 법원 모두에 의해 기각되었음.

; 민법 제469조 제1항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3년 1월 25일에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2차 소송(2018년 판결 선고 이후에 제기된 소송) 9건이 모두 원고 승소로 종결된 이후 정부/재단은 그 원고들에 대해서도 ‘해법’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음.

■ 하지만 ‘해법’은 이미 파탄상태임.

- 2차 소송 원고들이 받을 손해배상금은 수백억원대로 알려져 있으나, 재단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원은 포스코에서 받은 기부금 40억원이 전부이며, 그나마 1차 소송 원고들 중 수령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그 중 상당액이 지급되었음.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50여건임.

- 추가로 기부금을 내는 기업은 없고, 혹시라도 청구권자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를 하게 되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음.

; 2023년 3월 10일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이 있다. 그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혜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간에 기업들이 자발적 의사로 참여해주시길 기대하고 있다.” / 자발적?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청구권자금 수혜기업은 강제동원과는 관련이 없음.

- 재단이 ‘제3자 변제’를 할 수 있는지도 문제임.

; 재단 설립의 근거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 「특별법」 제1조는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동원 위자료 문제는 「청구권협정」과 관련이 없음.

; 또한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해주는 것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일 수도 없음.

■ 일본은 사뭇 냉담함

-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일본)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 2023년 3월 6일에 ‘해법’을 발표하면서, 박진 외교부장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음.
- 하지만 일본 기업도 정부도 ‘한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임.
- 키시다 수상은 3월 6일 밤 수상관저에서 기자단에게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이어받고 있다.”
- 하야시 외무대신은 3월 6일 오후 외무성에서 기자단에게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 국내 언론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1998년의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을 계승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두 사람은 ‘강제동원’은 커녕 ‘식민지 지배’도 ‘사죄’도 ‘반성’도 입에 올리지 않았음. 두 사람의 발언의 실체는 강제동원은 물론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자신의 평가를 내놓기를 거부한 것임.
 - ;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 - “오부찌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 일본의 수상과 외무대신이 강제동원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아무런 평가도 내놓지 않은 채 ‘역대 내각의 입장에 있으니 찾아보라’라고 한 것은 ‘요구되는 평가를 하기 싫다’ 내지는 ‘요구되는 평가와 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임을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님.
- 게다가 키시다 수상은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옆에 세워 놓고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아베 정부가 만든 조어인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도발까지 감행했음.

■ 「아베 담화」와 스가 정부의 ‘강제동원’ 각의결정

- 보다 큰 문제는 키시다와 하야시가 계승한다고 한 “역대 내각의 입장”에는

1998년의 공동선언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인 2015년 「아베 담화」와 2021년 스가 정부의 각의결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

- 2015년 8월 14일에 발표된 「아베 담화」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음.

; 「아베 담화」에도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나옴.

- “우리나라는 앞의 대전(大戦)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お詫び)의 뜻을 표명해왔습니다.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드러내기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인 아시아의 사람들이 걸어 온 고난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전후 일관되게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력해왔습니다.”

; 하지만 아베의 반성과 사죄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것임. 게다가 아베 자신의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이전의 일본 정부가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임.

; 매우 긴 아베 담화에서 단 한번 “한국”이 언급되는 이 부분에서 한국은 일본이 “전후 일관되게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력”해준 나라 중 하나일 뿐임.

; 아베 담화의 정점은 “일러전쟁은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라는 부분임. 한반도 침략의 한 단계였던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를 아시아·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것이 아베의 역사인식의 핵심임.

- 2021년 4월 27일의 스가 내각 각의 결정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것이었음.

; “조선반도로부터 내지(内地)에 이입된 사람들의 이입 경위는 다양하며, 그들에 ‘강제연행되었다’ 혹은 ‘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 또는 ‘연행되었다’라고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 또 국가총동원법(1938년 법률 제55호)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는 국민징용령(1939년 칙령 제451호)에 의해 징용된 조선반도로부터의 노동자 이입에 대해서는, 이들 법령에 의해 실시된 것임이 명확해지도록,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니라 ‘징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키시다와 하야시는 바로 그 아베와 스가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임.

■ 미국의 반응

- “매우 지지”, “신기원적 새 장”, “용기와 비전에 찬사”, “역사적 발표”

; 두 얼굴의 바이든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에 2차 세계대

전 당시 미국 정부가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했던 역사에 대해 “고통을 겪은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재확인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한다”라고 밝혔음. 미국의 공식 사과는 1988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래 이어지고 있음.

- 기시감 : 1905년의 미국
- ; 카쓰라-태프트 밀약
- ; 대한제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공사관 철수

IV. 일본군‘위안부’ 판결

1. 제소 ‘자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소송과 미국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한국 법원에 제소하기를 주저했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달리 일본국을 피고로 제소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한국 법원에서 제소할 경우 국가면제/주권면제(다른 주권국가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규칙)라는 관습국제법상의 허들을 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임.
- 2011년 8월 30일의 헌법재판소 부작위 위헌 결정(2006헌마788)은 그 점을 고려하여 선택한 우회로의 결과임.
 -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²⁾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2)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2. 제소 결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제소를 결단한 계기는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외교 장관 공동발표(‘2015 합의’)와 그 이후의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지우기였음.

- ‘2015 합의’에 담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는 일본 정부에게 한국 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를 언급도 하지 못하게 하는 빌미를 주었고, 실제로 일본 정부는 그렇게 했음.

; 2021년 2월 23일에 한국의 외교 2차관이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분쟁 관련 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꼽으며,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는 분쟁 속에서의, 그리고 분쟁 이후의 성폭력”이며, “현재와 미래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이른바 ‘위안부’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며 분쟁에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합의 위반’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음.

- 일본 정부는 2018년 무렵부터 일본군‘위안부’ 지우기에 보다 힘을 싣고 있음.

; 2007년 아베 내각 각의결정 :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드러내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 = 이른바 ‘협박의 강제성’ (2007년 3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아베 수상 답변)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 : “1965년의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결”, “2015년 12월의 일한 외상회담에서의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만’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숫자이다.”

; 2021년 스가 내각 각의결정 :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군위안부’ 또는 ‘이른바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단지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탈리아 및 그리스 법원에 의한 독일의 국가면제 배제

-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강제동원된 이탈리아인이 독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이탈리아 대법원은 2004년 3월 11일 강행규

범을 위반하는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국가의 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독일의 국가면제를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했음.

-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살해당한 희생자의 유족들이 독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그리스 법원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위반한 불법행위는 주권적 행위로 볼 수 없고, 독일은 강행규범에 위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국가면제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독일의 국가면제를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했음.

3.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3년 8월에 일본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신청한 조정어, 일본 정부의 거부로 진행되지 않아, 2016년 12월 30일 조정불성립이 결정되고, 2016년 1월 28일 본안에 회부된 1차 소송에 대한 판결이며, 이에 대해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2021년 1월 23일 0시에 확정되었음.

- 내용

- 국가면제 적용 배제
 - ;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다.”
 - ;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까지도 이에 대하여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 . .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 ;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해석에는 예외를 허용해야 함이 상당하다.”
- 반인도적 범죄
 - ; “이 사건 행위는 당시 일본제국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청구권협정」 및 ‘2015 합의’에 의한 미해결
 - ; “청구권협정은 일본제국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들이 청구하는 “일본제국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 ‘2015년 합의’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음을 선언하는 데 그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내용

■ 2016년 12월 28일에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며, 이 또한 일본이 상고하지 않아 2023년 12월 9일 0시에 확정되었음.

■ 내용

-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에게 자행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유효한 국제 관습법”임.
- ‘피고의 행위는 당시 피고가 가입했던 조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 자체가 되지 않음.”(「보도자료」)

5. 일본군‘위안부’ 판결들의 의의

■ 이러한 한국 법원의 판결들은 국가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권 중심의 세계관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인권 예외를 포섭하는 국가면제의 진화 과정에 적극 동참한 판결,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국가면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국가면제의 변화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음.

- 2021년 8월 23일에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브라질 영해 내에서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어선의 피해 유족들이 독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또는 법정지국 영역 내에서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선고하면서 ‘김정곤 판결’을 논거의 하나로 제시했음.
- 그리고 그 브라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구회근 판결’의 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

- 이 변화의 연쇄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게 주목하여 마땅할 것임.

■ 동시에 한국 법원의 판결들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기도 함.

-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1980년대 말에 한국의 여성단체들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래로,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이 스스로 나서서 피해사실을 밝히고 구제를 호소한 이래로,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은 범죄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음.
- 그리고 유엔 인권소위원회 등 수많은 국제기구의 보고서들,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 미국 하원의 결의 등 수많은 국가의 의회와 지방의회의 결의들을 통해 국제법 위반과 일본국의 법적 책임이 거듭 확인되어 왔음.
- 한국 법원의 판결들은 그러한 피해자 및 시민들의 요구와 그것을 수용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을 반영한 판결에 다름 아님.

■ 한국 법원의 특수성?

- 2018년 대법원 판결
- 국내의 과거청산 관련 소송을 통해 형성된 법원과 법관들의 감수성

6. 남은 과제

■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들을 전면 부정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도 하지 않을 것임.

■ 그렇다면 승소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법률(「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 제24호)에 따르면 가능함.

- 이 법률은, 일본 외무성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국제 물의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출선하여” 2009년에 비준한, 「국가 및 그 재산의 사법권 면제에 관한 유엔 협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임.
- 그리고 위의 「유엔 협정」의 전문에는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한 사법권 면제에 관한 국가실행의 발전을 고려하여” 체결한다고 되어 있음.
- 다시 말해 관습국제법화된 내용을 담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국가 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국내 법률로 확인한 국가인 것임.
- 실제로 ‘구회근 판결’에서는 해당 관습국제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로 위의 일본 법률과 「유엔 협정」이 제시되었음.
- 그런데 위의 법률 제18조에는 “외국 등은 당해 외국 등에 의해 정부의 비상업

적 목적 이외에만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당해 외국 등이 가지는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에 대해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일본의 법률가들도 인정하듯이, 이 조항을 원용하면, 한국 법원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 국내에 있는, 일반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상업적 용도의 자금관리를 위해 개설한 예금계좌와 관련된 예금채권, 유휴지 및 한국 항구에 정박 중인 일본 정부 소유의 상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V. 맺음말

* 참고문헌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 지식산업사, 2022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법학논고』(경북대) 49, 2015

「한국 법원의 일본군‘위안부’ 판결들」, 『일본비평』 25, 2021

「[판결비평] 한국 법원이 다시 한 번 일본의 ‘국가면제’를 배제했다」, 『참여연대』, 2023.12.26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54555>).